서초AICT 스타트업 3호 펀드 운용을 위한
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

의안 번호	32

제출연월일 : 2026. 09. 17.
제 출 자 : 서초구청장

1. 제안이유

○ **지방재정법 제18조**

-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'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'라는 규정에 따라 서초 AICT 스타트업 펀드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○ **의결 요청 사항 : 『서초AICT 스타트업 3호 펀드 출자』**

2. 주요내용

○ **출자근거**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-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1조(기금의 투자)
-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4조(기금의 용도)

○ **출자 필요성**

- 성공적인 특구 운영을 위해 특구 내 AI 스타트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지원 필요
- 현금 흐름에 부담이 있는 융자보다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를 선호하는 새로운 경제환경의 변화에(기업융자→기업투자) 대응할 정책 필요

- 단기성 위주의 지원정책이 아닌 성장단계별 전략투자를 통해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하고 외부자본(정부, 민간)을 유입하여 시드머니를 마련, 투자→성장→회수→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펀드 조성 및 출자 필요
- 2025년 서초AI스타트업 육성 펀드 신규 조성 이후 지속적인 기업 육성과 체계적인 기업 지원을 위하여 5년간 장기 투자 필요

○ **추진방향**

- 모태펀드 확보 및 민간자본 유입으로 안정적·효율적 자금 조달
- 공익성(기업성장 지원) 수익성(적정 수익률)의 조화
- 스타트업에 투자 및 성장, 자금회수,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 마련

○ **서초AICT 스타트업 3호 펀드 출자개요**

- 출자대상 : 서초AICT 스타트업 3호 펀드
- 투자대상 : 양재(서초구 관내) 소재 및 이전 예정 AI·ICT스타트업
- 출자금액 : 20억원
- 자금구성 : 구 출자금+모태펀드+운용사(GP)·일반조합원(LP)
- 운용기간 : 8년(투자 4년, 회수 4년)
- 운용방법 : 펀드 운용사 공모·선정 후 운용사가 조합원 모집·펀드 결성
- 조합형태 : 벤처투자조합
- 출자조건 : 양재(서초구 관내) AI·ICT스타트업에 구 출자금 200% 투자

3. 관련규정

○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○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1조(기금의 투자)

○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4조(기금의 용도)

관 련 법 령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① **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**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③ **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**

2.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1조(기금의 투자)

④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
<개정 2021. 7. 27.>

1. 벤처투자조합
2. 모태조합
3. 신기술사업투자조합

3.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4조(기금의 용도)

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5.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